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19. 1. 11.(금) 총 5매(본문)		
담당 부서	기술기준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정훈, 서기관 김문성, 주무관 박준수 • ☎ (044) 201-3570, 3571	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1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1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...안전·품질 높인다 미세먼지·강우·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

<지금은>

도로건설공사가 있는 ○○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(비작업일)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.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,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.

<앞으로는>

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, 폭염(일 최고기온 33℃ 이상)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.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.

○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,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.

- 특히, 천재지변,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절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.
- 이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근로기준법 개정('18.3.20)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, 기후변화, 품질·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 「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(국토부 훈령 제1140호, 2019.1.1. 제정, 2019.3.1. 시행)」을 시행할 계획이다.
- 공사기간은 준비기간, 작업일수,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,
 -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 위원회(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)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.
-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·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·폭설·폭우·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,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,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, 문화재 시·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.
-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


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- 다만,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·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*을 제도화 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.

*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(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(이하 ‘VE’))에 따라,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

- 이번에 제정된 「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 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·예규·고시)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.

참고 : 공사기산 산정기준 주요 내용 1부. 끝.

 공공누리 제1호(국익) 적용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문성 서기관(☎ 044-201-35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[1]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(제4조 제2항)

-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*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(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)에서 심의.
 - 단,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적절한 서면 검토 절차 이행.
 - *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/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[2] 공사기간 산정방식의 합리화(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- (준비기간) 도면검토,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유형별로 산정
 - * 공동주택 30일, 하천공사 40일, 강교가설공사 90일, 하천공사 40일 등
- (비작업일수)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,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.
 - (법정공휴일)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일요일, 국경일, 설날, 추석 등의 휴일을 말함
 - (기후여건)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(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) 적용.
 - * 관계법령과 기준(건설기준,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) 등에서 정한 공종별 작업제한 기상조건(강우·적설·바람·혹서기·동절기·미세먼지 등) 반영
- (작업일수)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(1일 8시간, 주 40시간 산정 원칙)를 말하며 공종별 표준작업량 또는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.
 - * 공종별 단위작업당 작업량을 말하며, 도로시설물, 철도시설물,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작업량을 제시

□ (정리기간)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

$$\text{공사기간} = \text{준비기간} + \text{비작업일수} + \text{작업일수} + \text{정리기간}$$

[3] 공사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(제16조, 제17항, 제18조)

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(또는 계약특수조건)에 공사기간 산출 근거 및 용지보상·지장물이설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 조건을 명시
- 현장설명서(또는 계약특수조건)에 명시된 공사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 조건이 당초와 차이*가 발생하여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

* 불가항력(태풍, 홍수, 지진 등)과,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제·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- 공사기간 변경 사유 및 발주청과 시공사간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